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138,817,332 | 34,164,520 |
| 일반회계 | 1,063,415,981 | 31,902,479 |
| 특별회계 | 75,401,351 | 2,262,041 |
| 공기업특별회계 | 70,956,907 | 2,128,707 |
|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| 40,118,657 | 1,203,560 |
|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| 30,838,250 | 925,148 |
| 기타특별회계 | 4,444,444 | 133,333 |
|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| 2,662,540 | 79,876 |
|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| 1,457,744 | 43,732 |
|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| 324,160 | 9,725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2년 재무부담 행위는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4 조 2022년 계속비 사업은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,645,977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